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2. 3.

발의자 : 윤후덕 · 박정 · 이원욱
이수혁 · 김경협 · 정춘숙
임종성 · 정세균 · 심기준
안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,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정부에서 제출한 「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203호) 및 「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204호)에 따르면,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납부불성실 · 환급불성실가산세와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가산금 제도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자연이자로서 유사한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.

이에 현행법에서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(가산금)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111조의3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「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203호) 및 「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20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

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1조의3제2항 중 “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”를 “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1조의3(강제징수) ① (생 략)	제111조의3(강제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----- -.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